

1. 개정이유

청약통장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의 일부 합산, 가점제 동점자 처리기준 신설, 미성년자 입주자
저축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인정기간 확대 (안 제10조)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5년, 인정총액을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나.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대 (안 제28조, 제46조)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
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24회를”을 “60회를”로, “24회의”를 “60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24회의 월납입금”을 “60회의 월납입금”으로, “24회의 월납입금”을 “60회의 월납입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2년을 초과하면 2년”을 “5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한다.

제28조제7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이 긴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이 같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추첨”을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이 긴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50%를 2.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나. 가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주택공급신청자의 점수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되는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점수는 최대 3점으

로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와의 합산 점수는 17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다만, 제46조에 따른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있어서는 2)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점수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7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성년자 입주자저축 가입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인정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종전의 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 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 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 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성년자가 아닌 경 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 서 납입한 횟수가 <u>24회를</u> 초 과하는 경우: <u>24회의</u> 납입횟수 만 인정한다.	2. ----- ----- ----- <u>60회를</u> --- ----- <u>60회의</u> -----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산정한다.	⑤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 액이 <u>24회의 월납입금</u>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u>24회의 월납입</u> 금 합계만 인정한다.	2. ----- -- <u>60회의 월납입금</u> ----- ----- <u>60회의 월납입</u> 금 -----.
⑥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 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	⑥ ----- -----

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나목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 ⑥ (생략)

⑦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⑧ ~ ⑩ (생략)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때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은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 5년을
초과하면 5년-----.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경우에는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이 긴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

-----.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이 긴

③ (생 략)	<u>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입주 자저축가입기간이 같을 경우 는 추첨---</u> ③ (현행과 같음)
---------	--